對 外 秘

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

2018. 6. 5. 기획조정실

1. 검토 배경

▣ **상고법원안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인식 현황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상황**

- **최근 언론의 우호적 보도**로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**긍정적 기류 확산**되면서, 상고법원 설치가 초래할 법관 사회의 **조직체계, 인사패턴,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대한** 일선 법관들의 **관심이 높아지고 있음**
- 그러나 **여전히 계층별 편차도 존재**하여, **젊은 법관들은 무관심한 태도**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, **고법 배석급 이상**에서는 향후 자신들의 **인사배치 등 이해타산적 입장과 시각**에서 상고법원 제도를 바라보고 있음
- 또한, **일부 진보 성향의 판사**들은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 부족한 상태에서, **사법부 수뇌부에 대한 반감, 소외감 등을 기저**로 **반대 목소리를 표면화하려는 움직임** 나타내고 있음

▣ **법원 내부의 이해 고취 및 결속력 강화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·가시적 방안 모색 필요**

- **법관**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**열망과 기대**는 **법률안 통과의 필수 전제조건** ⇨ 내부구성원의 **응집된 결속이야말로 외부 난관을 타개**할 수 있는 기반
- 법관들의 진정한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, **피상적 내부 소통 및 홍보 이상**의, 상고법원에 대한 **심층 소개, 법관 개개인의 관심 사항에 대한 직접적·구체적 설명, 반대 입장에 대한 설득 논리** 등 구축하여 **전파**하는 방안 필요

2. 상고법원에 대한 법원 내부 이해도 심층화 방안 등 모색

▣ **계층별 일선 법관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주요 공통 관심사항, 의문점 등 파악**

- [주안점] ① 일선 법관들의 **진솔한 의견 청취**가 관건, ② 이를 위해 **다층화, 다각화된 의견 수렴 방안** 모색
- [방안①] 각급 법원 **기획법관들을 통해** 일선 법관들의 **분위기 파악, 질의 사항 등 취합**
- [방안②] 상고법원 등 사법부 주요 현안 관련 법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**사법행정권자 입장**에서 바라본 **소속 법관들의 상고법원에 대한 시각 및 이해도 파악**
- [방안③] **행정처** 실국장, 부장, 심의관들의 **개인적 네트워크 활용** ⇨ 각 계층별·직급별로 접촉 가능한 법관들로부터 상고법원에 대한 의견이나 주요 관심 사항 등 파악

▣ **계층별·직급별 맞춤형 이해도 제고 및 설득 추진**

- <u>1법원 내부용 심층 Q&A 자료집 준비</u>

- 추출된 **계층별·직급별 법관들의 관심 사항, 의문점 등 정밀 분석** ⇨ **타깃별 분류화**

▪ (예시 ①) 인사 발령, 보직 관점에서의 계층별·직급별 관심 사항 등

▶**[지법 배석판사]** 장기적 관점에서 상고법원이 **향후** 법관으로서의 **라이프 사이클에 미치게 될 영향 등**
▶**[단독판사]** **상고법원 재판연구관 규모, 전보 발령 기준, 사법부 관료화 우려 등**
▶**[대법원 재판연구관, 고법 배석판사]** 대법원 재판연구관 규모 유지 여부, 현 직위에서 **상고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전보 발령 이루어지는지 여부** 등
▶**[지법 부장판사]** 상고법원 도입과 **고등부장 전보 발령의 상관관계, 인사적체 해소 기여 여부 등**
▶**[고법 부장판사 이상급]** **상고법관 임명 절차, 임명 기준, 상고법관 임기 만료 후 인사 패턴 등**

■ (예시 ②) 상고법원 도입 취지, 제도 개요 등에 관한 의문 사항

▶인위적으로 승진 대상 보직이 늘어남에 따라 **법관 관료화가 심해지지 않을지?**

▶**헌재와의 관계**에서 대법원의 **최고법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**하는 것 아닌지?

▶'헌법위반' 또는 '판례위반' 사유는 주장에 따라 얼마든지 성립 가능하므로, 결국 어정쩡한 **4심제가 되는 것 아닌지?**

▶**사실심 충실화와 상고법원**이 **어떤 연관성**이 있는지 명확하게 와 닿지 않음

▶**상고사건 적체**하는 주된 **이유**는 **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인정에 지나치게 개입하기 때문**이라는 지적이 많은데, 이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해야 하지 않을지?

▶대법관 증원, 상고허가제는 차치하더라도, 고법 상고부, 대법원 이원적 구성 등 상고법원 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**다른 제도 개선책도 많이 있는데**, 왜 **상고법원 제도만을** 사법부가 올인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**밀어붙여야 하는가?**

- 분류화된 영역별로 **체계적 답변 자료 작성**

● 2Q&A 자료의 효과적 활용

- 사법연수원 **경력별 연수의 '사법행정의 주요 현안' 강의**를 통해 소개

- 각급 법원 **법원장들에게 자료집 송부** ⇨ 소속 법관들과의 티타임, 오만찬 자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내용 전달

- 각급 **법원 워크숍, 법관 간담회, 직급별 판사회의** 등을 통해 정보 제공

■ 다만 외부유출 위험 방지를 위해 자료 배부를 지양하고 기획법관에 의한 프리젠테이션 활용

-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**코트넷 상고법원 게시판에 게재**하는 방안 검토

▣ 일부 법관의 반대 입장 외부 공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

● 돌출 행동 **위험성 높은 법관들**의 상고법원 관련 입장 등 사전 점검하여 **선제적 설득 작업 착수** 필요

● 내부 설득에도 불구하고, 언론 등을 통해 반대 의견 표방하고자 시도하는 경우, **위기 대응체제 가동**

- **사전 분위기 감지 긴요** ⇨ 해당 법관 소속 **법원장, 친분 있는 법관 등을**

통한 자제 권고

- 언론사 기자 등과의 접촉을 통해, 보도 자제 또는 수위 톤다운 요청

● 보수 언론을 통해 대응 논리 유포 ⇨ 반대 입장 폄하·고립화 전략 추진

- 종래 진보 성향 판사들의 돌출성 언행 전력 등 부각

● 후속 보도 제지로 부정적 분위기 확산 차단

3. 향후 계획

▣ **일선 법관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그에 대한 풍부한 답변 자료, 설득 논리 마련을 위해 기조실, 정책실 등 관련 실국간 협업 수행**

● 기동성·효율성 제고를 위한 **슬림화된 소규모 팀 구성** ⇨ 기획제1심의관, 기획조정심의관, 사법정책심의관

▣ **법관들 인식 현황 점검 및 관심 사항 등 취합: 7. 9.까지**

● 기획법관을 통한 의견 취합

● 7. 7. 수도권 법원장 간담회 결과 분석

● 기타 행정처 심의관 등 개별적 법관 접촉결과 취합

▣ **Q&A 자료집 작성 : 7. 12.까지**

● 정책실 주도로, 법관들의 다양한 관심 사항, 의문점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

● 상고법원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가

● 대외비를 전제로, 설득력을 강조한 진솔하고 풍부한 자료집 준비

▣ **기타 Q&A 자료집 활용 방안 등 최종 검토 결과 보고 : 7. 15.까지**